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전금액 미반환 시 피선거권 제한 등 >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보전금액 미반환 시 피선거권 제한 ····· 3
2.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 유예 ····· 1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3.

3. 회 부 일 : 2024. 9.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

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보전금액 미반환 시 피선거권 제한(안 제49조제7항 등)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⑦ ~ ⑩ (생 략)	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 ⑫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擧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	⑫ ----------제11항----------. ⑬ ----------제11항----------. --------

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생 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⑧ ----------제49조제11항----------.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	⑩ ----------. ----------제49조제13항----------

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65조의2[1]는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6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기타 공직선거 출마 현황을 보면, 총 21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으며, 그 중 6명은 당선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전비용 미반환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기타 공직선거 출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금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3		33	제8회 지선(당)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1	1	110	제8회 지선(낙)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4		24	제8회 지선(낙)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6		136	제22대 국선(낙)
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		19	제6회 지선(낙)/ 제7회 지선(낙)
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6		26	제6회 지선(낙)

1)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금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7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	9	3	제6회 지선(낙)
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4		24	제6회 지선(당)
9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		21	제6회 지선(낙)/ 제7회 지선(낙)
1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		17	제7회 지선(당)/ 제8회 지선(낙)
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8	118	10	제7회 지선(낙)
1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5		85	제7회 지선(낙)/ 제21대 국선(낙)
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7		37	제7회 지선(당)/ 제8회 지선(당)
1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3		83	제7회 지선(당)/ 제8회 지선(사퇴)
1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0		110	제8회 지선(낙)
1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		21	제7회 지선(낙)
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2		32	제7회 지선(당)/ 제8회 지선(당)
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5		105	제8회 지선(낙)
1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0		80	제7회 지선(낙) / 제21대 국선(낙) / 제8회 지선(낙)
2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9		29	제7회 지선(낙)/ 제8회 지선(낙)
2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64	28	136	제6회 지선(낙)

- 성명 등 개인정보 대신 연번으로 대체
- 노란색 셀 : 소멸시효 완성자(2024. 7. 31. 기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당선무효로 인해 보전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미반환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공직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고 선출직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선거권 제한 사유>

일반범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자나 가석방된 자로서 형기나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제44조(자격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권에 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선거범죄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 제한 사유>

일반범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제44조(자격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권에 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선거범죄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30⑥(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166의 죄를 범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보전비용 미반환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당선무효가 확정된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및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고 보전비용 반환의무는 당선무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채무인데 이러한 금전적 채무는 국세·지방세·공과금 미납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미납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비용 미반환이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9조[2]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사유와 비

2)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하여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취지가 보전비용 미반환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앞서 미반환된 보전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이라면,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3] 및 「지방세징수법」[4]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처럼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통해 보전비용을 환수하는 방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의 각호[5]에 따라 중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탁금과 보전비용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기탁금 및 보전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결의를 실시하여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반환 및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실시할 공직선거에서 입후보를 제한

---

5)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예외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후보자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개인회생 결정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사람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 유예(안 제57조제5항 등)

개정안은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第135條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	第135條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

~ ④ (생 략)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현행법 제265조의2[6]는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423명이고, 반환명령액은 466억원임. 이 중 343명이 260억원을 반환하였고, 80명이 200억원을 미반환하였으며, 미반환액 중 국비는 11억원이고, 지방비는 189억원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보전비용 미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반환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전비용 미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음.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현황(2024. 7. 31.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교육감 선거(2008년)	1	2,885	-	1,888	1	997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6	543	6	543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9	991	9	991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33	3,841	24	2,947	9	894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5	723	4	645	1	7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77 (4)	12,707 (7,463)	71 (0)	5,569 (639)	6 (4)	7,138 (6,8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97 (9)	10,392 (6,281)	75 (4)	5,401 (1,828)	22 (5)	4,991 (4,45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0 (2)	4,811 (1,513)	42 (0)	2,249 (28)	18 (2)	2,562 (1,48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45 (3)	5,148 (2,772)	24 (0)	1,442 (1)	21 (3)	3,706 (2,771)

(단위 : 명,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총 계	423 (18)	46,678 (18,029)	343 (4)	26,060 (2,496)	80 (14)	20,618 (15,533)

( ) 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반환 대상자와 반환대상 금액 등을 말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미반환액이 당선무효자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저질러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보전비용의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예한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을 지체없이 보전하도록 하려는 내용은,

현행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단기의 공소시효(6개월)와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을 채택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전금 미납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2021. 5. 25.), 다만, 불기소처분 및 무죄 확정판결시 보전유예금액에 대해 법

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